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2377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희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0. 22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## 주 문

1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8. 29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. 8. 30. 접수 제248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 B는 원고에게 30,172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  2. 피고 1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- 피고 2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**판사**이성호

별지